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"을 "금융위원회 규제심사위원 회 운영규정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자체규제심사위원회"를 "규제심사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"자체정비"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제1항 중 "자체심사"를 "자체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"로 하고, "자체규제심사위원회"를 "규제심사위원회"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"7인 이내"를 "10인 이내"로 한다.

- 제4조제1호 중 "규제개혁 계획수립 등 규제개혁 전반"을 "소관 규제의 신설, 강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"로 하고, 제2호 중 "자체 규제심사 시 행계획 수립"을 "소관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"으로 하고, 제3호 중 "규제의 자체심사 실시"를 "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"로 하 고, 제4호를 삭제한다.
- 제5조제1항 중 "1년으로 하되"를 "2년으로 하고, 1차에 한하여"로 하고,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각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

- 1. 국회의원·지방의회 위원
- 2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
- 3.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
- 4.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.
 - 1.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 - 2.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
 - 3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었거나 주주인 경우
 - 4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·조 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
 -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제척 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원의 해촉)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3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를 제8조로 한다.
- 제7조를 제9조로 하고, 제9조제3항 중 "이 회의를 소집할 때"를 "위원장은 이 회의를 소집할 때"로 한다.
-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, 제5항,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.
 -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 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⑦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- 제10조(비밀준수 의무 등)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-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.
-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3조제2항 "이해관계인으로"를 "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로"로 한다.
-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4조 조항명 중 "자체심사의견서"를 "심사의견서"로 하고, 제2항 "자체심사의견서"를 "심사의견서로 한다.

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, "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"를 "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"로 한다.

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행정규제	제1조(목적)
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	
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	
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	
금융위원회 <u>자체규제심사위원회</u>	<u>규제심사위원회의</u>
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	
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	
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
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<u>"유사행정규제"라 함은 금융</u>	3. (삭제)
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	
는 금융유관기관의 정관·내규	
등 각종 규정중 국민·회원 등	
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	
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.	
<u><신 설></u>	4. "자체정비"라 함은 행정규제
	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
	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
	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
	행위를 말한다.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금융위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
원회 소관 규제의 신설·강화의	
타당성 등에 대한 <u>자체심사를</u>	<u>자체심사 및</u>
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	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

융위원회 위원장 소속하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. 당연직 ②-----위원과 7인 이내의 위촉위원으 -----10인 이내-----로 구성한다.

③ ~ ④ (생략)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사항
- 2. 금융위원회 자체 규제심사 시행계획 수립
- 3.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의 자 체심사 실시
- 4. 유사행정규제 신설·강화에 대한 자체심사

5. ~ 6. (생략)

임할 수 있다.

②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 ② (삭제) 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 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.

<신 설>

	<u>규</u>	제심사
<u>위원회</u> (이하	"위원회"라	한다)
를 둔다.		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

- 1.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계획수 1. ----소관 규제의 신설, 강 립 등 규제개혁 전반에 관한 화 등에 대한 자체심사에-----
 - 2. ----소관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
 - 3. ------규제개선 건의과 제 검토
 - 4. (삭제)

5. ~ 6. (현행과 같음) 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제5조(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 ① -----2년으로 하고, 1차에 한하여----.

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

 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

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

 으로 한다.

-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
 - 1. 국회의원·지방의회 위원
 - 2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
 - 3.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
 - 4.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-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.
- 1.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- 2.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
- 3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

 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

 체 등의 임직원이었거나 주주

 인 경우
- 4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

<신 설>

심의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·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

-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 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 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제척 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
- 3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 는 경우

제9조(회의의 소집)

-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7조(회의의 소집)

- ①·② (생 략)
- ③ 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 ③위원장은----의의 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

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④ (삭제)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 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	-
	_
,,	_
•	

-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 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 다.
-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되 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 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며,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 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⑦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 한 경우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 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.

제10조(비밀준수 의무 등) 위원회 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

제8조(의결) ① (생략)

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·의결에 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10조(배석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이해관계인으</u> 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 다.

제11조(<u>자체심사의견서</u> 작성 등

- ① (생략)
- ② 위원장은 규제명, 심사일시 및 참여자 내용, 평가요소별 심 사의견, 규제신설(강화)에 대한 종합심사의견, 심사참여자의 주 요이견 등을 포함한 <u>자체심사의</u> 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심사청구)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<u>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</u>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
<u>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</u> <u>서는 아니 된다.</u>

제11조(의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삭제)

제13조(배석 등) ① (현행	과 같음)
②	
이해관	계인 또
는 외부전문가로	
제14조(<u>심사의견서</u> 작성	등) ①
(현행과 같음)	
2	
	심사의
견서	
_ 제15조(심사청구)	
,	
<u>행정규제기본법</u>	
<u> 규정에 따라</u>	